

공개공지의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이상민 부연구위원, 김영현 연구원

요약

-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공개공지는 2012년 4월 기준 1176개소로, 그 전체면적은 여의도 공원의 4배에 가까운 910,100m²에 달하고 있어 공개공지가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이제까지 주로 공개공지의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가 도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나 현재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DB나 시스템 등 관련 제도는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정책제안

- 공개공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이와 함께 공개공지 정기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의 구체화가 필요함
- 공개공지에 대한 정보를 시, 자치구, 지역, 필지 등 위계별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적합한 세부내용을 수집,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수준 높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

1 배경 및 필요성

- 도심 속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공개공지
 - 공개공지는 도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의해’, ‘민간자본’으로 제공되는 중요한 도시공간으로, 지가가 높은 도심에서 공공공간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도시의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와 가능성을 가짐
 - 특히 도심지 내 건축물이 고층화 및 대형화됨에 따라 공개공지의 면적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공간으로서 공개공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도 커짐
-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버려지는 공개공지
 - 건축주가 공개공지를 타용도로 무단 점용하여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 공개공지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이며,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자들에게 위험을 주기도 함
 - 또한 공개공지는 건축주가 관리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고 버려져 심한 경우에는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경우까지도 발생함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관리되지 않는 공개공지

- 공개공지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 대두
 - 2012년 4월 기준,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25개 자치구 전체 공개공지는 1176개소로,¹⁾ 그 전체면적은 여의도공원(229,539㎡)의 4배에 가까운 910,100㎡에 달하고 있어 이제 서울에서 공개공지는 양적으로도 도시 공공공간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이제까지 공개공지가 주로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공개공지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

1) 자치구별 살펴보면, 공개공지 개소는 강남구(197개소)가 가장 많고, 영등포구(92개소), 중구(86개소), 서초구(84개소), 구로구(83개소), 마포구(67개소), 금천구(63개소) 순이며, 면적은 구로구(167,114.8㎡), 금천구(106,589.3㎡), 강남구(101,580㎡), 영등포구(70,296.2㎡), 광진구(54,258.3㎡), 중구(50,536.1㎡), 송파구(48,656.6㎡) 순으로 나타남

2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공개공지 운영 관리 체계 및 인력

- 공개공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 지자체의 공개공지 현황을 전산자료화하며, 이를 통해 공개공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 점검계획 수립 및 자치구에 하달, 관련 조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등의 업무를 수행함
 - 25개 자치구에서는 건축인허가 시 공개공지 검토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공개공지 위반건축물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이와 같은 정보들을 공개공지 관리대장으로 작성하여 공적공간관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함
- 공개공지 관련 담당인력 부족
 - 공개공지 관련 업무 담당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각 1명이며, 이들은 공개공지 이외에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므로 공개공지가 많은 자치구는 현실적으로 공개공지 관리가 어려움

■ 서울시 공개공지 관련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운영
 - 서울시는 2009년부터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공지, 건축선후퇴, 공공보행통로, 쌈지공원, 미술장식품 등과 관련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
 - 주요 관리항목은 건축물명, 주소, 용도지역, 건축층수, 면적, 건축물 용도, 용적율, 건폐율, 건축년도 등의 건축물 일반현황과 해당 공개공지 면적과 건축기준 완화내용, 2009년 이후 공개공지 위반사항 등임
-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 서울시는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전산화하여 세움터 시스템과 별도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관련 담당자들만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함
 - 관리항목도 공개공지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특히 해당 필지에 대한 도면만 제공하여 주변 도시 공간과의 관계 파악이 어려움
 -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개공지 관련 정보를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누락되는 경우가 많음

■ 서울시 공개공지 정기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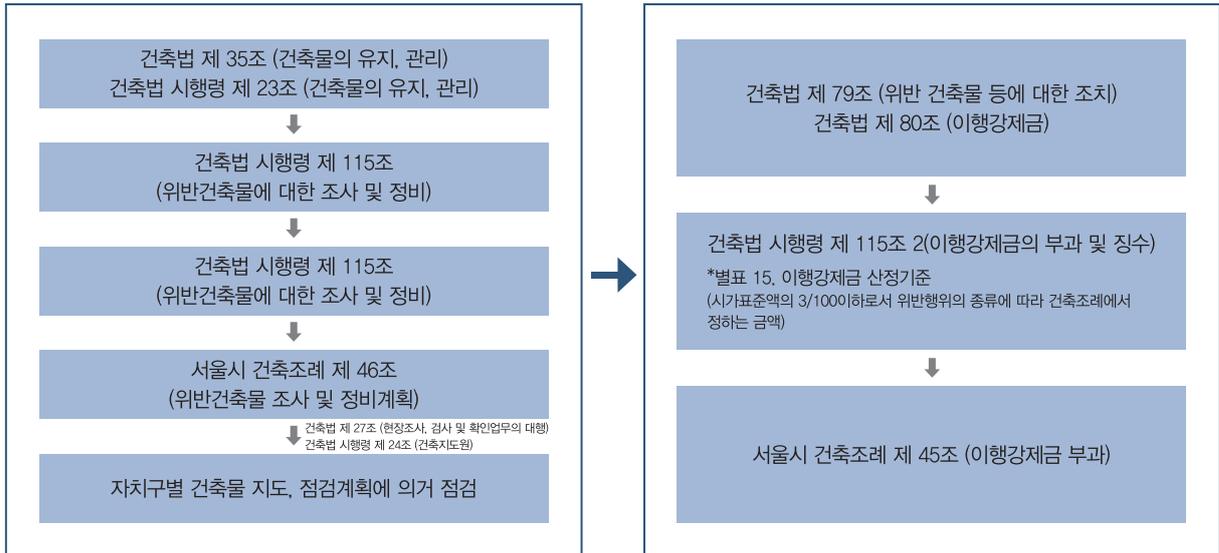
- 매년 1회 공개공지 정기점검 실시
 -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기점검은 매년 1/4분기에 수립한 자치구별 점검계획²⁾에 의거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자체점검을 실시함³⁾
 - 점검결과는 매년 4/4분기에 서울시에서 총괄 취합하며, 2009년부터는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 관리함
 - 주요 영업행위 무단증축, 불법시설물 설치 및 물건적치, 시설물 훼손, 울타리 설치 및 입구 폐쇄 등 공개공지를 사유화하여 이용되고 있는 사항을 주로 점검함
- 제한적인 점검대상과 구체적인 정기점검 지침 부재
 - 점검대상은 10만㎡이상 대형건축물의 경우에만 2년에 한번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전체 공개공지를 점검할 수 없음
 - 위반건축물 정기점검시 각 조사항목별 위반기준에 대한 세부 점검기준이 부재하여 점검자별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서울시 공개공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현재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따라 자치구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법 시행령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에 공개공지 위법사항에 대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액수도 영업행위 무단증축에 따른 실제 이익 보다 훨씬 적어 건축주로 하여금 공개공지 개선을 유도하기 어려움
 -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과정도 매우 복잡하여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하는데 약 3개월 정도 소요됨
-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근거와 수단 미비
 - 위법행위를 한 공개공지에 대해 현행 규정으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기준만 적용 가능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과 근거가 부족함

2) 공개공지 점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서울시 건축조례 46조)에 근거하여 위반건축물 종합점검계획의 한 부문으로써 시행함

3) 공개공지가 가장 많이 조성된 강남구는 대한건축사협회에 실태점검을 의뢰함



공개공지 정기점검 및 위반행위 관련 규정과 절차

3 해외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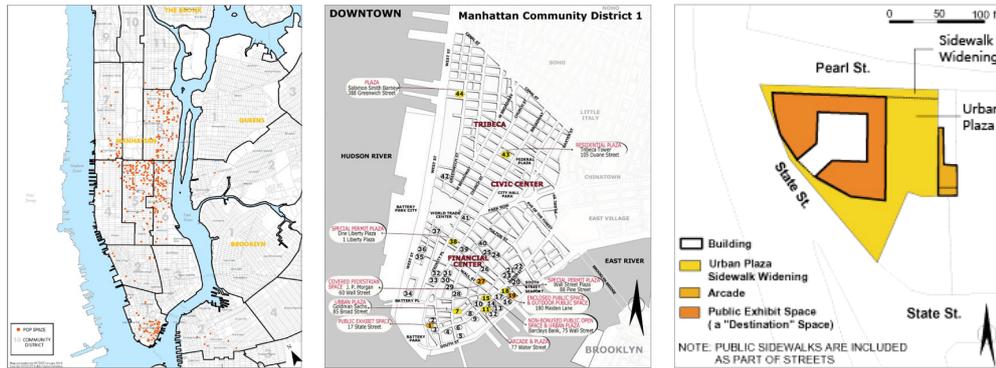
■ 뉴욕시 공개공지 유지관리 사례

- 체계적인 공개공지 DB 구축 및 구체적인 관리대장 운영⁴⁾
 - 뉴욕시는 2000년 Jerold S. Kayden가 뉴욕시 공개공지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수행하여 공개공지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DB를 구축함
 - 뉴욕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은 일반정보, 공개공지 법적 근거, 인센티브, 공공공간의 형태 및 크기, 운영시간, 편의시설, 허가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규제 및 집행, 추가설명, 소유자와의 소통, 설계도면 등 총 12가지 항목으로 된 세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이용자 중심의 공개공지 정보 공개
 - 공개공지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 접근성, 편의성, 쾌적성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 중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홈페이지에는 뉴욕시 내 10개 지구(맨해튼 8개 지구, 브루클린 1개 지구, 퀸즈 1개

4) Kayden, J.,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The New York City Experience", 2000, pp.64~71.

지구)에 구성되어 있는 공개공지를 위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지도, 목록, 그리고 세부정보를 제공하고 있음⁵⁾

- 1단계에서는 뉴욕시 전체 분포된 공개공지 조성 현황, 2단계에서는 각 지구별 공개공지 위치 및 유형에 대한 현황, 3단계는 공개공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측면에서 알아야 할 공개공지별 세부정보를 제공함⁶⁾



[1단계] 뉴욕시 전체 공개공지 위치도 [2단계] 맨해튼 1지구 내 공개공지 위치도 [3단계] 개별 공개공지 평면도

출처 : <http://www.nyc.gov/html/dcp/html/pops/pops.shtml>

■ 도쿄도 공개공지 유지관리 사례

- 종합설계제도에 의한 공개공지 조성
 - 일본의 공개공지 제도와 관련이 있는 법제도는 건축기준법 제59조의2에 명기되어 있는 종합설계제도로, 1969년 건축기준법 개정에 의해 제도화됨
 - 공개공지에 대한 심의 및 허가는 특정행정청⁷⁾에서 이루어지며, 교통, 안전, 방재, 위생을 비롯하여 건폐율, 용적률, 사선제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함께 진행하여 시가지 환경정비 개선에 기여한다고 인정할 시 건축심의회 동의를 얻어 추진됨
- 건축주와 관리책임자로 구분된 공개공지 운영관리 주체
 - 건축주는 종합설계제도를 적용한 건축물을 사용하기 전에 공개공지 등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부분, 공개공지의 질, 주택성능의 질, 고품자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실시할 것 등에 대해 별도의 양식에 따라 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서약서를 도쿄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 관리책임자는 관련 도서(각층 평면도, 공개·공공공지 등의 계획도, 건설주택성능평

5) http://www.nyc.gov/html/dcp/html/pops/pops_inventory.shtml

6) <http://www.nyc.gov/html/dcp/html/priv/17state.shtml>

7) 건축주사를 두고 있는 시정촌 구역에서는 해당 시정촌장이, 그 밖의 시정촌 구역에서는 도도부현지사가 담당하며, 용도지역 예외허가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함

- 가서 등)를 잘 보존해야 하고, 동시에 해당 공개공지 등의 적절한 운영과 질, 주택성능의 질, 고령자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적절한 유지 등에 대한 관리 결과를 1년에 한 번 도쿄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함
- 특히 공개공지의 질과 관련하여 수목의 개수, 잔디 및 입체 녹화 등의 면적을 허가 시와 현재로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양식을 별도로 마련함
- 건축물 또는 부지를 양도 또는 임대할 경우, 양도 등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양도 등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승계함을 명시함

4 유지관리 제도 개선방안

■ 공개공지 관리대장 개선

- 공개공지의 질적 측면에 대한 관리항목 추가
 - 공개공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개선이 가장 시급하며, 특히 공개공지의 질적 측면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접근가능한 시간, 편의시설 관련 항목, 장애인 접근가능여부, 관리자 정보, 공개공지 세부설계도면 등의 항목 추가가 필요함
- 공개공지 관리대장 표준양식 마련
 - 각 자치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개공지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표준양식이 필요하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내 별표에 포함시켜 활용할 수 있음

■ 공개공지 정기점검 내실화

- 공개공지 정기점검 항목 개선
 - 공개공지의 정기점검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현재 공개공지 점검항목에 공개공지의 접근, 공개공지 사유화 방지, 공개공지 내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들의 추가가 필요하며, 각 점검항목별로 조성 시와 점검 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와 연계
 - 현재 공개공지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은 자치구별로 시행하여 서울시에 결과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운영방식은 점검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위반행위 결과
 과가 상이하고, 공개공지의 통합적인 관리도 어려우므로 일정 단위로 묶어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최근 건축법 개정(건축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항)에 따라 10년 이상된 유지관리 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은 지정된 유지관리 점검자를 통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10
 년 이상된 건축물의 공개공지 정기점검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체계적인 공개공지 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시 공적공간 관리시스템의 정보체계를 시, 구, 지역, 필지 등 위계에 따라 구분
 하여 각각에 적합한 내용을 재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공개공지 제도의 운영지침 마련

- 도시의 중요한 공공공간으로서 수준 높은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조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
 적인 운영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시행할 수 있음

이상민 부연구위원(031-478-9642, smlee@auri.re.kr)

김영현 연구원(031-478-9619, yhkim@auri.re.kr)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발행인 제해성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관양동)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www.auri.re.kr

